

근로자가 공장건물에 발생한 화재 진압을 하다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사망한 경우 회사의 책임

2005가단88449

[재판요지]

공장 근로자가 근무 중 공장 건물에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고, 건물 내에 있던 근로자들이 모두 대피하였고, 자신도 건물 밖에 있어 대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피하지 아니하고, 비치되어 있던 분말용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려다가 유독가스를 흡입하고 사망한 경우, 망인의 화재진압시도 행위는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충분히 예상되고, 기대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망인이 대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42,098,206원, 원고 정○○, 정○○에게 각 24,398,804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2. 8. 22.부터 2006.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 (1) 소외 정○○는 2000. 4. 1.경부터 피고 회사

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야간 근무 중이던 2002. 8. 22. 20:19경 경산시 ○○면 ○○리 소재 피고의 자인공장 내 제직실에서 형광등 내부 배선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안에 있던 여성 근로자들이 대피하자, 그 곳에 비치된 분말형 소화기를 들고 진화 작업을 하던 중 유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져 흡인성 상기도 화상, 2도화상, 양측 성대 마비 등의 상해를 입고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2005. 2. 25. 위 화상의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2) 피고 회사의 공장 건물은 조립식 판넬지붕으로 되어 있고, 공장 내부에는 면직류의 제조과정에서 나온 분진이 누적되어 있어 화재발생의 위험이 높고, 화재시 유독가스가 배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

나. 피고의 손해배상업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 및 공장 건물의 소유자로서 공장내의 노후된 전기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교체하여,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공장에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게 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망인 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면제 및 제한

피고는, 공장 건물 안의 근로자들은 모두 대피하였고, 피고 공장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화재 발생 수 분 후에 소방관이 출동하였음에도, 화재 발생 당시 공장 건물 밖에 있어서 충분히 대피가 가능했던 망인이 대피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무리하게 공장 안으로 들어가 화재를 진압하려다가 유독가스를 흡입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화재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망인의 사망은 오로지 망인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화재 당시 야간 근무를 하던 근로자들 중 현장책임자의 지위에 있었고, 화재가 발생한 직후 숙직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 회사의 차장 박○○와 함께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의 초기단계에서 분말용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려다가 유독가스를 흡입하고 건물 안의 탈의실에 쓰러진 것이고, 박○○ 또한 위 화재 진압 과정에서 안면부, 양팔 및 기도의 화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공장 건물 밖에 있어 대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피하지 아니하고 화재 발생 직후 차장인 박○○와 함께 그 곳에 비치된 분말용 소화기로 화재 진압을 시도한 것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망인에게 충분히 예상되고, 기대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망인이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한편 공장 안에 직물이 많아 화재시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망인이 공장외부로 대피할 수 있을 정도의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아니한 채 화재 진압을 하려다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공장 건물 내부에 쓰러져 손해를 확대시킨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망인의 잘못을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에 비추어 망인의 과실을 20%로 정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가동연한 및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원고들이 구하는 대로 망인의 사망이후의 일실수입만을 계산하고, 망인의 사망일인 2005. 2. 25. 부터 2005. 8. 24.까지는 월 1,877,948원, 그 다

음날부터 피고 회사의 정년인 55세가 되는 다음날인 2015. 4. 13.까지는 월 2,023,677원, 그 다음날부터 60세에 이를 때까지는 월 1,215,544원(월 22일씩 200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55,252원 인정)의 소득이 인정되나, 계산의 편의상 중간 기간은 월 단위에 맞는 날짜로 변경하여 계산한다.

나. 개호비 : 원고들은, 정○○의 중환자실 입원 기간을 뺀 나머지 입원기간인 23개월간 1일 70,000원이 드는 전문간병인의 개호가 필요하여 42,777,726원의 개호비가 들었고, 여기에서 2중 요양비로 지급받은 31,398,130원을 공제하면 개호비 손해가 11,379,596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김○○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의 입원기간 동안 2회 정도의 전문 간병인의 간병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기간 전문 간병인이 아닌 원고 김○○가 정○○를 간병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정○○의 개호에 필요한 비용은 1일 일반개호인 1명으로 인정하여 계산한 31,071,390원(사고당시 도시일용노임 45,031원 × 30일 × 23개월)이 되나, 위 금원은 이미 2중 요양비로 지급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개호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에게 42,098,206원, 원고 정○○, 정○○에게 각 24,398,804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2. 8.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